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제2020-제30호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 계획 공고

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시행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붙임.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비용 지원사업 안내(신규기관용)

1. 추진 배경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음
 - * 2020년 8월 기준, 권역별 총 12개소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운영 중
-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이 지급해야하는 위탁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진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약 장애 요인으로 분석된 위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지역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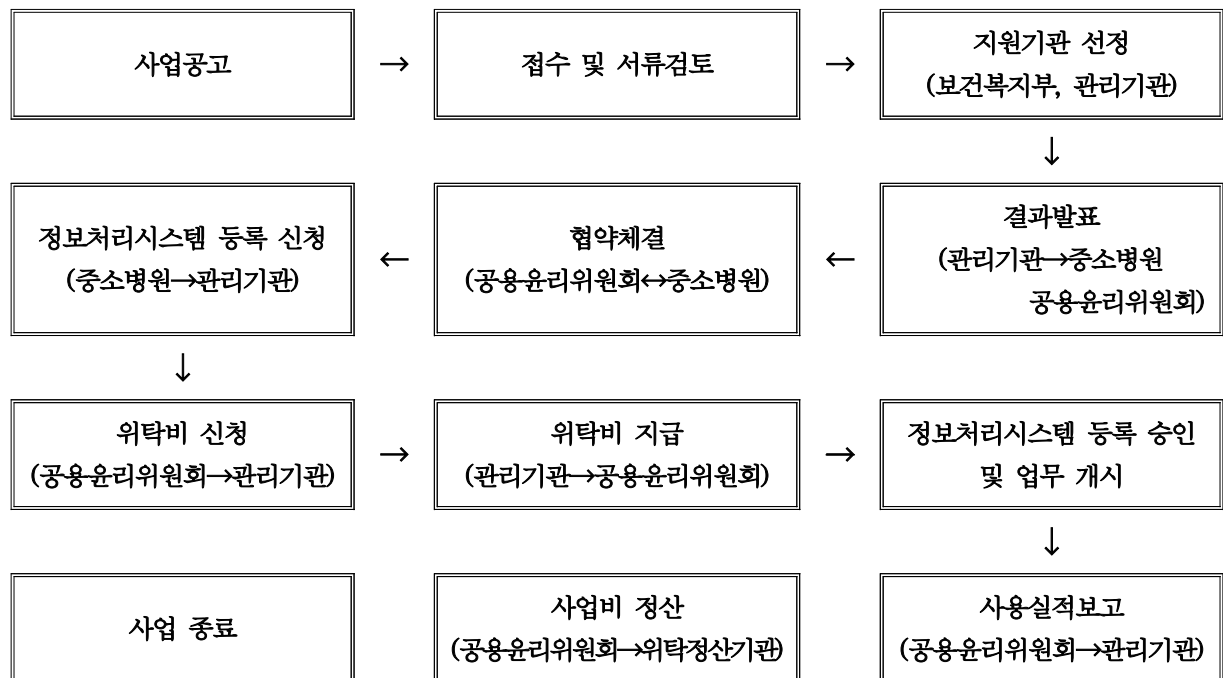
2. 사업내용

- (사업명)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비용 지원
- (대상기관)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 협약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 * 2020년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 협약하여 위탁비를 지원받을 신규 24개소 선정
- (지원내용) 200만원/기관
 - * 해당 비용은 협약기관을 지원하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지원하는 금액임
- (지원기간) 2020년 9월 29일(화) ~ 2021년 9월 28일(화)
- (지원 방법)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비 일괄 지급

3. 사업 추진 일정

- (사업공고) 8월 25일(화)
- (신청접수) 8월 25일(화) ~ 9월 11일(금) 17:00까지
- (결과발표) 9월 16일(수), 개별통보 예정
- ※ 세부 일정 변동 가능

〈행정 절차〉



4. 세부 추진내용

가. 공고 및 신청 절차

- (사업공고) 8월 25일(화)
- (신청대상)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원하는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 (신청접수) 8월 25일(화) ~ 9월 11일(금) 17:00까지

○ (신청 방법) :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공문을 이메일로 접수

○ (접수처) med_nibplst@nibp.kr

○ (접수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관리팀(02-778-7564)

관할지역 공용윤리위원회([참고1]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 및 연락처)

○ (필요서류)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문

○ (선정 방법) 관할 지역별 요양병원 분포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

* 해당 기관의 위탁협약 가능 범위 및 사업비 예산을 고려해 최종 선정

○ (결과발표) 9월 16일(수), 개별통보 예정

나. 협약체결 및 위탁비 신청 절차

○ (협약체결)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신청 의료기관이 직접 협약

- (신규 선정기관) 9월 23일까지

○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신청) 9월 23일까지 등록 신청

- 협약신청 의료기관은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체결 후 5일 이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 기관 신청

※ 제출서류 및 인증 수단 : 보건복지전용 공인인증서, 공문(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위탁 협약서(사본)

※ 참고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 기관신청하기 - 의료기관 신청방법 안내

다. 업무 개시

○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승인일로부터 1일 후 업무 개시

5. 관련 서식

- [서식]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 [참고1]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 및 연락처
- [참고2]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공용윤리위원회 안내
- [참고3]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협약 절차 안내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탁기관 구성 및 주요인력

가) 위탁 기관명

-

나) 위탁기관

- (조직도)

- (주요 연혁)

*

*

- (기타)

다) 주요인력

구분	성명	부서	직위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비고
책임자						
업무 담당자						

라) 연명의료 시술 현황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4가지 의학적 시술 시행 여부를 O/X로 표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마) 연명의료 관련 서식작성 예상 건수(작성 대상 환자 수)

- (말기 환자)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참고1**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 및 연락처**

No.	기관명	내용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화번호	02-2626-2429
		이메일	pingky0304@naver.com
		관할지역	서울 서부(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2	국립중앙의료원	전화번호	02-2276-2260
		이메일	bnsj2013@nmc.or.kr
		관할지역	서울 동부(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3	국립암센터	전화번호	031-920-0471
		이메일	pinekiss@ncc.re.kr
		관할지역	경기
4	충북대학교병원	전화번호	043-269-8817
		이메일	190105@cbnuh.or.kr
		관할지역	충북
5	전북대학교병원	전화번호	063-250-2600
		이메일	24410@jbuh.co.kr
		관할지역	전북
6	영남대학교병원	전화번호	053-620-3873
		이메일	device01@ymc.yu.ac.kr
		관할지역	대구, 경북
7	부산대학교병원	전화번호	051-240-7716
		이메일	soyeon9000@naver.com
		관할지역	부산, 울산, 경남
8	제주대학교병원	전화번호	064-717-2111
		이메일	maconkey@jejunuh.co.kr
		관할지역	제주
9	충남대학교병원	전화번호	042-280-8633
		이메일	ethicscommittee@cnuh.co.kr
		관할지역	충남, 대전, 세종
10	인하대병원	전화번호	032-890-1183
		이메일	zoazoa9790@naver.com
		관할지역	인천
11	강원대학교병원	전화번호	033-258-9217
		이메일	KNUHETHICS@knuh.or.kr
		관할지역	강원
12	전남대학교병원	전화번호	062-220-6913
		이메일	aruem-23@cnuh.com
		관할지역	광주, 전남

참고2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공용윤리위원회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 (법률제정) ‘18. 2.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환자·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짐
- (제도운영의 기반) 연명의료를 받지 않길 원하는 일반국민·환자의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의 기반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내용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u>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 수행 가능</u>	19세 이상 성인은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u>지정 받은 등록 기관에서만</u>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음
설치 방식	의료기관 자체 설치·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 (위탁협약 제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만 수행 가능
 - 단, 윤리위원회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인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윤리위원회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 체결을 통해 윤리위원회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

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현황

○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 및 관할 지역)

공용윤리위원회	관할 지역
고대구로병원	서울 서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동부
국립암센터	경기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경북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충남대학교병원	충남, 대전, 세종
인하대병원	인천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 (운영현황)

‘20.7월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총 12개소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 운영 중

○ (위탁협약체결 현황) ‘18년 1개 기관, ’ 19년 51개 기관

기관별 / 구분	‘18년 위탁협약	‘19년 위탁협약	합계
고대구로병원	0	8	8
국립중앙의료원	0	3	3
국립암센터	0	9	9
충북대학교병원	0	2	2
전북대학교병원	0	4	4
영남대학교병원	1	5	6
부산대학교병원	0	8	8
제주대학교병원	0	6	6
충남대학교병원	-	6	6
합계	1	51	52

□ 위탁 비용 지원사업 안내

○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중소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위탁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19년 신규)
- (사업내용) 300병상 미만 기관 위탁 비용 국고지원

구분	내용
대상 기관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지원 내용	위탁비용 200만원(협약 후, 공용윤리위원회에 지급)
지원 기간	협약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사업 현황	- 2019년 51개소 지원 - 2020년 51개소 지원(2019년 협약기관, 계속) - 2020년 신규 지원(예정)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관리팀	02-778-7564 med_nibplst@nibp.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	https://www.lst.go.kr/

참고3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협약 절차 안내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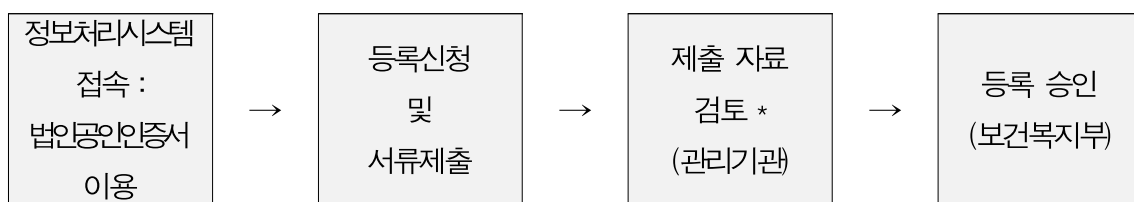
- 윤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탁한 의료기관(위탁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위탁협약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위탁협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등록

✓ 위탁 내용	✓ 위탁 기간	✓ 위탁 비용
✓ 위탁에 따른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위탁의 종료 ·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

- 등록 신청공문 1부(신청 기관장 발행, 스캔 후 파일 첨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위탁협약서

□ 등록 절차



※ 신청 이후의 진행 상황은 시스템 ‘신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자료보완 요청’ 함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관리팀	02-778-7564 med_nibplst@nibp.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	https://www.lst.go.kr/